

## 대학구조개혁협의회 규정

**제1조(목적과 명칭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법인”) 및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)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본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·제안을 목적으로 대학구조개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라 한다.

**제2조(기능 및 업무)** ①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(원) 학사제도개선 및 기구·직제개편의 수립·심의 및 제안
2. 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화 방안 수립 심의·제안
3. 교직원 연봉제 및 평가방안 재정립
4. 기타 주요 정책 개발 및 제안

② 위원회 관련 업무는 법인사무국에서 담당하고, 대학교 기획처 팀장이 지원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4명으로 구성하며, 법인 임직원 1인과 대학교 교원 3인으로 구성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법인 1명과 대학교 교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다.

**제4조(임무)**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, 담당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한 업무에 대하여 연구·개발·자문 및 심의·의결한다.

③ 법인 사무국은 협의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5조(회의 소집 및 의결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
③ (회의록)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인 사무국에서 보관한다.

**제6조(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)** ① 제도개선 업무 분야에 따라서 담당업무 부서장과 팀장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 중 1인이 실무위원장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각 실무위원회의 실무지원업무는 대학교 각 팀장이 담당한다.

**제7조(실행)**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법인 이사장의 결재 후 대학교에 통보하고, 담당 부서는 통보 받은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재정)**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, 여비 교통비, 출장비,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운영세칙)**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업무 과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2. 02. 08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